

[별표 1]

적합인증 대상기자재

(제3조제1항 관련)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	
					SAR	전자파 강도
1. 무선전화정보 자동수신기	가. 무선전화정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	○	○			
	나. 무선전화정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	○	○			
	다. 무선전화정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	○	○			
2. 무선방위 측정기	가. 의무 비치용	1) 중파무선방위 측정기	○	○		
		2)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				
		3) 곁용무선방위 측정기				
	나. 임의 비치용	1) 중파무선방위 측정기	○	○		
		2)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				
		3) 곁용무선방위 측정기				
3.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	
4. 경보자동전화장치		○	○			
5.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	가. 항공이동업무의 기기	○	○			
	나. 육상이동업무의 기기					
	다. 해상이동업무의 기기					
6.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	가. 국제 항해용 레이더	1) 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이상	○	○		
		2)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2cm미만				
		3)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				
	나. 국내항해용 레이더	○	○			
	다. 국내소형선박용 레이더	○	○			
7.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		○	○			
8.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		○	○			
9.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		○	○			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	
					SAR	전자파 강도
10.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	가. 선박국용	○	○			
	나. 해안국용					
11.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		○	○			
12.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	가. MF·HF송수신장치	○	○			
	나. VHF송수신장치					
13.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	가. MF전용수신기	○	○			
	나. MF·HF전용수신기					
	다. VHF전용수신기					
14. 네비텍스수신기		○	○			
15.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	가.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	○	○			
	나.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					
16.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	가.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	○	○			
	나.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					
17. 자동 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선박 자동 식별장치	○	○			
	나.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					
18.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일반업무용	○	○		○	
	나.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	○	○			
19.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			○			
20. 라디오부이의 기기			○			
21. 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, 제15조,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○	
22.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		○	○			
23. 무선표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○	
24.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	○	○		○	
	나.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	○	○			
	다.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		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	
					SAR	전자파 강도
	라.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	○	○			
	마. 기 타	○	○			
25.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	○	○		○	
	나.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	○	○			
	다.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		
	라.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	○	○			
	마. 기 타	○	○			
26.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	○	○		○	
	나.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	○	○			
	다.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		
	라.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	○	○			
	마. 기 타	○	○			
27.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	○	○		○	
	나.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	○	○			
	다.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	○	○			
	라.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	○	○			
	마. 기 타	○	○			
28.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○	
29.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○	
30.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	
31.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	가. 육상용	○	○		○	
	나. 해상용	○	○		○	
	다.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·수신기기	○	○			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	
					SAR	전자파 강도
32.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○	
33.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	
34.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HF대 기기	○	○			
	나. VHF/UHF대 기기 등					
35. 가압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2.3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○	○			
	나. 26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				
36.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	
37.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2.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○	○			
	나.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				
38.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○	
39. 자계유도식 무선기기		○	○			
40.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○	
41.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		○	○			
42. 특정소출력 무선기기	가. 무선조정용 무선기기	○	○			
	나.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	○	○			
	다.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	○	○			
	라.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	○	○			
	마.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	○	○		○	
	바. 중계용 무선기기	○	○			
	사.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	○	○			
	아.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	○	○		○	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	
					SAR	전자파 강도
	자.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	○	○			
	차.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	○	○			
	카.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	○	○			
43. RFID/USN용 무선기기	가. RFID용 무선기기	○	○		○	
	나. USN용 무선기기					
44.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	400M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○	○			
45.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	가.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○	○			
	나. 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				
	다. 5.8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				
46. 코드없는 전화기	가. 1.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○	○	○	○	
	나. 2.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					
47. UWB 및 용도 미지정기기	가.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	○	○			
	나. 용도미지정 기기					
48. 단말기기류	가. 무선 모뎀	○	○	○		
	나. 비상통보기기 (화재 가스,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)	○		○		
	다. 원격검침용 통신기기	○	○	○		
	라.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(IPTV 셋톱박스 등)	○		○		
	마.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(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)	○		○		
	바. 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(EPON, GPON, 광모뎀 등)	○		○		
	사. 이와 유사한 단말기기류	○		○		
49. 시스템류	가. 전화교환기(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)	○		○		
	나. 데이터교환기	○		○		
	다. 전화/데이터 겸용 교환기(ISDN교환기 포함)	○		○		
	라. 구내교환기(PBX)	○		○		
	마. ATM교환기	○		○		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	
					SAR	전자파 강도
	바. 키폰시스템	○		○		
	사. 키폰과 구내교환기(PBX)의 혼합시스템	○		○		
	아. 자동음성처리시스템(카드식 포함)	○		○		
	자. 전자사서함시스템(카드식 포함)	○		○		
	차. 자동착신방식(DID) 기능이 있는 멀티 미디어 서버	○		○		
	카.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	○		○		
	타.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	○		○		
	파.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	○		○		
50. 회선중단 장치류	가. 채널서비스유닛(CSU)기능을 가진 기기	○		○		
	나. 채널서비스유닛(CSU)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	○		○		
	다. 채널서비스유닛(CSU)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,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	○		○		
	라.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	○		○		
	마. 광통신용 회선중단장치	○		○		
	바. 근거리(LAN), 원거리(WAN) 전송장치 (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)	○		○		
	사. PCM단국장치	○		○		
	아.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중단 장치류	○		○		
51.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	가. 진폭변조기	○		○		
	나. 주파수변조기	○		○		
	다. 디지털변조기 (64QAM, 256QAM, QPSK)	○		○		
	라.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(아날로그방식, 디지털방식,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)	○		○		
	마.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	○		○		
52. 방송공동수신 설비류	가. 증폭기	○		○		

대상 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
		전자파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	
					SAR	전자파 강도
	나. 레벨조정기	○		○		
	다. 광 송신기 및 수신기	○		○		
	라. 광증폭기	○		○		
	마.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	○		○		
	바.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(DtoA)	○		○		
	사.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	○		○		
	아.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	○		○		
	자.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	○		○		
	차.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	○		○		
53.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	가. 이동국의 송수신장치	○	○		○	
	나.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	○	○			
	다.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	○	○			
	라. 기 타	○	○			
54.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		○	○			
55.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	가. 기지국의 송수신장치	○	○			
	나.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	○	○			
56.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	가. 고정형 기기	○	○			
	나. 이동형 기기	○	○			
57.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	가.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	○	○			
	나.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					
※ 비 고 1. 제42호 나목 및 아목, 제43호, 제45호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,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. 2.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.						

대상 기자재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
	전자파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인체보호
				SAR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(적합등록)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.</p> </div>				